

심의결과 원안대소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2	16	1984. 7. 19.	총재 최창락

의안 :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의결사항 :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: 한국은행법 제 56 조, 제 57 조, 제 59 조  
법규조항

제의취지 : 「금융기관의 상호부금최고이율 및 예금지급준비 대상 제외 결정」규정이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현재 예금지급준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호부금 및 주택부금을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에 반영하고자 본 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참고사항 : 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56 조

- ①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- ② (생략)

한국은행법 제 57 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 58 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.

한국은행법 제 59 조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57 조, 제 58 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
2.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 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

「金融機關의 預金支給準備에 關한 規程」一部 改正(案)

現 行	改 正 案	備 考
<p>第1條(省 略)</p> <p>第2條(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) ① (省 略)</p> <p>② 中小企業銀行,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에 대한 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は 前項의 率을 適用한다.</p> <p>③ (省 略)</p> <p>④ (新 設)</p>	<p>第1條(現行과 같음)</p> <p>第2條(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) ① (現行과 같음)</p> <p>② 中小企業銀行에 대한 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は 第①項의 率을 適用한다.</p> <p>③ (現行과 같음)</p> <p>④ 相互賦金 및 住宅賦金은 預金支給準備金預置對象 預金 債務에서 除外한다.</p>	<p>韓國銀行法 改正(1982.12.31. 法律 第3624號)에 따른 字句 修正</p> <p>○ 相互賦金: 「金融機關의 相互賦金 最高利率 및 預金支給準備對象 除外決定」에서 吸收</p> <p>○ 住宅賦金: 住宅賦金の 預金支給準備對象 除外決定 (1968.3.7. 第10次 金融通貨運營委員會 議決)事項의 規程 明文化</p>
<p>第3條-第6條(省 略)</p> <p>(新 設)</p>	<p>第3條-第6條(現行과 같음)</p> <p align="center">附 則</p> <p>이 規程은 1984. 7. 23. 부터 施行한다.</p>	